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조 제 1항중 "별표 3에 의한 여비를"을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으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청주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의 출장"으로 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 7조 제 1항 관련)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92. 9. 17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

(단 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현 지 교 통 비 (1일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야당)	식 탁 료 (1야당)
의 장 부의 장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5,000	17,000	11,000	800
의 원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5,000	17,000	11,000	800

- 비 고 : 1.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동일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 323 -

현행									개정안								
<p>제 1조 - 제 7조 (생략)</p> <p>제 8조 (의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u>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u> 한다.</p> <p>② 제 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 북도의회 사무실이 있는 <u>청주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u></p> <p>제 9조 (생략)</p> <p>[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 7조 제 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p>제 1조 - 제 7조 (현행과 같음)</p> <p>제 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u>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u></p> <p>② <u>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의 출장</u></p> <p>제 9조 (현행과 같음)</p> <p>[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 7조 제 1항과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식탁료 (1야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식탁료 (1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을지 4,000	갑지 17,000 을지 15,000	갑지 11,000 을지 9,500	800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800

현행									개정안								
(단위 : 원)									(단위 : 원)								
의원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갑지 17,000	갑지 11,000	800	의원	1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800
					을지 4,000	을지 15,000	을지 9,500										
<p>비고 :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p> <p>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p> <p>3. 철도운임은 새마을호 특실로 하되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p>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비고 : 1.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p> <p>2.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p> <p>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현행		개정안
[별표 2] (생략) [별표 3]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 (제 8조 제1항 관련)		[별표 2] (현행과 같음) (삭제)
여행거리	지급액	
12킬로미터 이상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전액	
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	별표 1의 현지교통비의 5할	
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	
2킬로미터 미만	지급하지 아니함	
비교) 대중교통이라 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대중교통수단의 정기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조례는 '1992년 9월 17일 부터 시행한다.